

[시론] 잊힐 권리?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소위 '잊힐 권리'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를테면 홍길동이 12 년 전에 세금체납을 이유로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던 과거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다고 요청만 하면 '홍길동'의 인터넷 검색결과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홍길동에게 동업 제안을 받은 사람이나 홍길동이 출마한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인터넷 검색으로는 경매와 관련된 글을 볼 수 없게 된다.

검색결과 조작은 정보독점 초래

이런 판결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인터넷이 각광받는 것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정보가 쏟아지는 TV와는 다르다. 인터넷에서의 소통은 게시자와 열람자의 '합의'로 완성된다. 그런데 이런 합의가 가능하려면 열람자는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지 미리 알아야 한다.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고 열람하는 것은 합의에 의한 열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검색 서비스'다.

우리는 검색 서비스가 합법성 등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찾아줄 것을 기대한다. 가령 전 남자친구와의 섹스 동영상처럼 명백히 불법적인 정보가 검색에서 제외된다면 누구도 놀라지 않는다. 하지만 합법적인 정보가 검색에서 배제된다면 어떨까.

정보를 미리 보여주는 검색 서비스가 누군가의 잊히고 싶은 욕망으로 조작된다면 앞으로의 인터넷은 합의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 소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끔찍한 억압과 불평등이 된다. 홍길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종 신문의 모든 기사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작업으로 뒤져야 하고 운이 좋아야만 홍길동의 과거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결국 엄청난 수작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과 집단만이 홍길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과 독점이 발생한다. 이것은 바로 인터넷이 싸워왔던 적들이다. 예측 불가능한 검색결과 조작은 인터넷 이전 시대로 복귀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롭고 평등한 소통도 좋지만 사람에 대한 평가만큼은 너무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판결을 해석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불가능하다. 경솔한 판단을 막는 것은 더 많고 정확한 정보이지 재단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람에 대한 평가와 사물에 대한 평가는 구분이 불가능하다. A라는 문제 많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실은 홍길동이 시작하려는 B건축사업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이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

홍길동이 A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검색에서 배제한다면 B건축사업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처럼 인간세계 모든 사물의 정보는 어떻게든 특정인에 대한 정보와 연결된다. 건물 A는 항상 홍길동이 지은 건물이고 사람에 대한 평가를 포기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평가를 포기하는 것과 같게 된다.

구글은 지난 5 월 말부터 검색결과 배제신청을 받았다. 9 만 1,000 여명이 신청했는데 대다수가 전문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이라고 한다. 전문 서비스업은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검색결과가 조작되면 누구에게 좋을까. 소비자들은 이제 검색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 단지 더 큰 병원, 더 큰 서비스 업체를 찾아갈 것이다. 인터넷이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서울경제, 2014 년 08 월 07 일 자

[시론] '감시'를 요구하는 잊혀질 권리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퍼날랐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한 좋은 판결이다. 사실 '인터넷에 올리기'는 없다.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특정 게시판에, 특정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지 이용자들이 모두 보게 되는 '인터넷'이란 곳은 없다. 자신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 몇 개를 조용히 보관해놓은 것은 아무리 공개 블로그라 하더라도 법적 규제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사적인 것이다. 인터넷은 광장이라기보다는 수억개의 작은 방들의 집합체다.

잊혀질 권리는 과거의 나를 타인이 잊어주기를 위하여 자신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명예훼손도 프라이버시 침해도 아니지만 지워달라는 주장이다. '한번 공개되었다고 할지라도 무시간적으로 영원히 공개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가 합법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접한 것은 아니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막을 프라이버시권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옳다. 위에서 말했듯이 인터넷 이용자들이 모두 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모두가 그 글을 실제로 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과거의 정보를 현재의 인터넷에 올렸다가 '잊혀질 권리' 주장 때문에 삭제를 요구받는 사람 입장에 적용해보자. 그가 현재 시점에서 올린 정보도 모두가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실제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 일반에게 공개되었던 정보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가 남아 있다고 하는 만큼이나 현재 그 정보를 올리는 것도 사적인 통신이 되며 잊혀질 권리 규제는 여기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사적인 통신까지 차단 대상이 되는 것이야말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위의 국가보안법 피고의 행위가 너무 사적이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잊혀질 권리 주창자들은 이미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감시라며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를 종식시키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감시라면 타인이 어떤 정보를 올렸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감시다. 즉 잊혀질 권리는 누가 나의 과거사를 또 올리고 있는지 지속적인 웹서핑을 할 권리, 즉 동료들을 감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집행될 수 있다.

이 모순은 구글스페인 판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실 잊혀지길 원하는 정보 자체를 차단 삭제할 정도의 잊혀질 권리는 어디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구글스페인 판결은 잊혀지기를 원하는 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배제시킬 권리는 인정하였다. 한 번의 공개를 수용한 것이 영원한 공개의 수용이 아니듯이, 여기서 잊혀질 권리는 한 웹사이트에서의 게시를 수용한 것이 검색까지 수용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색은 매우 사적인 통신이다. 특히 검색결과 페이지는 검색자에게만 보인다. 그런데 구글스페인 판결대로 특정 글이 인명 검색을 통해서 검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글은 모든 사람들이 무슨 검색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해야 한다. 우리는 결국 구글을 통해 우리 서로를 감시하는 셈이다. 누가 타인의 과거사를 검색하는지 말이다. 제발 생각해보자. 자신의 과거사가 '사적'인 거라서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타인들이 관련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없도록 막고 싶다면 그러한 정보공유를 막으려는 것 또한 그 타인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전제로 하지 않는지. 일관성이 있는 사회라면 잊혀질 권리는 존재할 수 없다.

한겨레 신문, 2014 년 8 월 7 일 자

[시론] 잊혀질 권리, 진실유포죄, 세월호

세월호 참사의 시작은 표현의 자유 문제였다. 부패와 비리에 대한 최고의 예방책은 이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사고 발생 3 개월 전에 청해진해운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직원이 세월호의 빈번한 과적관행에 대해 청와대신문고에 올렸다고 한다. 관련 공무원들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빠 과적 관행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직원이 정말로 빠른 문제 해결을 바랐다면 그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을 것이다. 그랬다면 수도권 지역 제주행 수학여행을 세월호가 독점한 상황에서 그 수많은 학부모 중 누군가는 과적의 위험을 주시했을 것이고 세월호의 침몰은 애초에 예방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해피엔딩을 기대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과오를 고발하는 모든 사람이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 307 조 제 1 항은 허위로 입증되지 않은 언사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언사를 발설한 자는 처벌될 수 있다. 물론 형법 제 310 조에 의해 '오로지 공익을 위한' 언사는 합법으로 인정받지만 어디까지 공익으로 인정받을지 확신이 없는 일반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익을 인정받지 못해 진실된 고발을 하고도 처벌받는 사례가 허다하다. 실제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실명으로 거론해도 '공익'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2013 년 현재 아파트노인회 간부의 폭언과 폭행을 고발하는 노인회 회원의 카페글도 '공익'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세월호 과적에 대한 고발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진실유포죄'는 인권의 보호와 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세월호 후속대책으로 안전위반을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법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법이 없어서 세월호 사태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그 위반 사실을 알리려는 사람이 항상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우리는 제 2, 제 3 의 세월호 참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 9.11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면 그 첫 단추는 진실 유포죄의 폐지다.

그럼에도 진실유포죄를 도리어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바로 '잊혀질 권리'다. 즉 자신의 과오나 상처를 상기시켜주는 글의 유통을 제한할 권리다.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없는 게시물도 관련 사실을 타인들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면 공론의 장에서 지울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뜻대로 된다면 비리에 대한 고발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 이 권리의 주장자들은 공익적인 고발은 허용될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이것은 왜 헌법에 표현의 자유 조항은 있고 행동의 자유 조항은 없는지를 망각한 답변이다. '합법적인 진실이라도 공익적이지 않으면 입을 다물라'는 명령은 개인의 윤리적 독립성에 남겨져야 할 표현과 사상의 영역까지도 집단적 결정으로 재단하겠다는 전체주의의 망령으로 들린다. "잊혀질 권리를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게시물 하나씩 따져보자고?" 그렇게 집단적인 돋보기를 들이대는 순간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수많은 개인들의 소통욕구는 증발하거나 지적 계토로 숨어들 것이다.

그런 의미의 '잊혀질 권리'는 어차피 세계 어디에도 입법화된 바 없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정보 주체들이 사적 검열자로 활동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런 위험 때문에 이를테면 유럽개인정보보호규범도 '언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 왔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여기서 '언론행위'는 언론사의 행위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누가 하든 '언론행위'에 해당한다고 일찍부터 밝혀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개인정보보호규범을 해석 적용한 구글 스페인 판결에서도 게시물들의 유통 자체는 막지 않았고, 구글의 '인명검색'에서만 배제했던 것이다. 유럽의회도 '잊혀질 권리' 논의를 폐기하고 '자신이 제공한 정보(자신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를 삭제할 권리로 대체하였다. '잊혀질 권리'는 더 이상 일고의 가치도 없다.

사실 구글 스페인 판결이 창안한 '인명검색에서 배제할 권리'도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지자들은 "누구도 타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 권리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삶은 평가와 선택의 연속이다. 평가와 선택에 필요한 어떤 정보는 타인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고 그 타인은 완벽히 공익과 무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태 이전에 '유병언 회사 선박은 12년 전 과적을 했었다'는 정보는 공익적이라는 집단적 판정을 받았을지 불분명하다. 사람들의 결정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명예훼손도 아니고 프라이버시 침해도 아닌 어떤 합법적인 정보가 단지 타인에 대한 정보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검색을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중앙일보, 2014년 7월 21일 자

[시론]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유럽사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잊혀질 권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그 근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데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말은 듣기 좋아 보이지만, 타인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성립불가능하다. "박경신은 교수이다"와 같은 정보도 내가 유통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보가 합법적으로 남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또 무슨 이유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인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원래 취지는 '정보감시'의 예방인데 1967년 앨런 웨스틴이 <프라이버시와 자유>에서 처음 쓴 말이다. 정보감시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업체에 제공할 때, 이 정보가 원래의 제공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원래 수집기관이나 업체 밖으로 유출되어 자신에 대한 다른 정보와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감시'란 물론 도청, 압수수색, 미행과 같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지만, 개인이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정보가 축적되는 것만으로도 '감시'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정보감시'라고 부른 것이다.

이에 따라 웨스틴은 정보감시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의 이용목적과 범위를 사전에 통보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제공한 모든 정보의 축적과 이용은 자신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므로 더 이상 '감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웨스틴의 제안은 그 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되었고 이러한 법률들이 보호하는 법익을 우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문언 그대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그 정보가 이용되는 범위와 목적을 통제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결정권"은 바로

자신만 가지고 있던 정보가 외부로 나갈 때 행사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일반에 이미 공개하여 이미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박경신은 교수이다'가 그런 정보에 포함될 것이다. 또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으로 공개가 강제된 정보 등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아는 정보를 취득하는 건 감시가 아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을 잘 살펴보면 실제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벨기에 등에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004년 APEC도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00년에도 EU와 미국은 1995년 EU디렉티브가 미국 정보처리자의 EU인들의 개인정보 처리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이프하버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EU디렉티브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의한 바 있다.

사실 1995년 EU디렉티브 역시 "언론 목적"의 개인정보처리는 규제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언론"이란 반드시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인 언론사에 의한 보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모두가 알게 되는 정보는 더 이상 '정보감시'로 기능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까지 정보 주체의 통제대상이 된다면, 감시를 막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 동료에 대한 사상통제로 기능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경향신문, 2014년 6월 26일 자

[시론]잊혀질 권리

우리가 보통 '잊혀질 권리'라는 말을 쓸 때 "누구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질 권리"인지가 자주 잊혀진다. 구글? 정부? 포털? 아니다. 일반시민들, 우리 동료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질 권리를 말한다. '잊혀질 권리'는 일반인들이 타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볼 수 없도록 하여 그것의 기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망각되도록 할 권리를 뜻한다.

무엇이 잊혀지길 원하는가? '잊혀질 권리'라는 규범이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들이 잊혀지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프라이버시'라는 규범만으로도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 '잊혀질 권리'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잊혀질 권리'는 잊혀져야 하는 내용이 프라이버시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차단·삭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처음 '잊혀질 권리'가 논의될 때는 성폭행 피해자나 과거에 매매춘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갱생할 자유를 보장하자는 논의와 동반되었고 이러한 '과거'의 생성과정과 공개과정을 따져보면 프라이버시로 인정될 만하였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는 프라이버시와 전혀 무관하게 단순히 '자신이 싫어하는 과거를 타인의 기억으로부터 삭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 4 월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 스페인' 결정이 바로 그런 예를 보여준다. 한 변호사가 연금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자신의 집이 경매에 처해졌을 때 16 년 전의 신문에 실렸던 경매공고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달라는 신청을 받아준 것이다. 경매공고는 내용이 합법적이었음은 물론 일반대중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경매공고는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를 경매절차에서 관철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절차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이 경매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경매를 부정축재의 온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럽사법재판소는 과거의 경매사실이 구글의 '정보수집 목적에 부적절하고 무관하고 과도하다'면서 구글 검색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명예훼손은 물론 사생활의 침해도 아닌 합법적인 정보를 안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잊혀질 권리'는 결국 동료들이 이미 적법하게 알고 있던 자신에 대한 진실을 국가의 힘을 빌려 동료들의 기억으로부터 삭제하겠다는 시도일 뿐이다. 동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으니, 그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관련 정보가 상호 간에 소통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기억이 시간에 의해 파괴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대중들 사이의 합법적인 소통을 차단하고 검열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사업가'의 이미지를 '실패를 모르는 사업가'의 이미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자신의 성공사례들을 강조하고 실패 사례들에 반박하는 방식이 아니고 타인들 간의 합법적인 소통을 차단하고 검열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반대하는 견해를 냈던 검사장의 말이 명징하다. "과거의 보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보도를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하는 것은 역사를 위조하는 것(falsification of history)."

아무런 설명 없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잊혀질 권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공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만 사인에 대해서까지 진실을 모두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합법적인 정보라면,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은 세월호 같은 사고에 대해서만 할 자유가 있는 것인가. "프라이버시는 뭘 하든 간섭받지 않을 권리"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석하자면 합법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타인에 대해 자유롭게 견해를 형성하고 공유할 자유는 왜 또한 프라이버시가 아닌가?

경향신문, 2014년 6월 8일 자